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517

제출년월일 : 2002. 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과학실업교육과 제안이유

-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충청북도 과학교육에 대한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를 두며,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주요골자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임무(안 제2조, 제3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의 기능(안 제4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정근거

-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

 제정조례안 : 본 입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발췌서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과학교육 진흥 업무와 관련되는 본청의 과장급 이상 및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
2. 과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④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3. 그밖에 과학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록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심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서

■ 과학교육진흥법 (법률 제6432호 2001. 3. 28)

제5조 (과학교육심의회) ① 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과학교육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그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의회와 지방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중앙심의회와 지방심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와 중앙심의회와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임무(안 제2조, 제3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와 지방심의회와의 기능(안 제4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와 지방심의회와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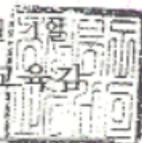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02 18 호

충청북도의회 부의 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6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



부 의 안 건	주 요 골 자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임무(안 제2조, 제3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의 기능(안 제4조). ○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361-703 /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전화 (043)290-1229 / 전송(043)292-1525
의사과 과장 조계환 의사담당사무관 김왕년 담당자 임재혁

문서번호 의사 81433 -106

시행일자 2002. 5. 31.

(공개여부) 공개

수신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기획관리과장

신발	유감	지시	
접수	일자	2002 5. 31	부교무감
	번호	2142	기획관리과장
처리과	기획관리과	공람	기획관리과장
담당자			의회담당
심사자		심사일	

제목 의안이송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2. 5. 31.)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송합니다.

의안번호	안 건 명	심의결과
141-1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의결

붙임 의안 2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2년 5월 31일

제안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심의회 구성 최소인원을 명시하여 위원 구성인원을 명확히 하고,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적정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심의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함.(안 제2조제1항)
- 나.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함.(안 제2조제4항)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 안 제2조제1항 중 “15인” 을 “9인 이상 15인” 으로 한다.
- 안 제2조제4항 중 “3년” 을 “2년” 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 <생 략>	제1조 <원안과 같음>
제2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9인 이상 15인
②~③ <생 략>	②~③ <원안과 같음>
④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칙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2년
제3조~제8조 <생 략>	제3조~제8조 <원안과 같음>
부 칙 <생 략>	부 칙 <원안과 같음>